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8.

발의자 : 이소영 · 김영환 · 박상혁

김남근 · 박지혜 · 한병도

김성희 · 김원이 · 김태년

임오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「한국 산업은행법」이 개정되었고,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.

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,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04조의36 신설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 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4조의36(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

례) ①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(이하 이 조에서 “한국산업은행”이라 한다)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
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

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04조의36(한국산업은행의 첨단 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업 특례)</u> ①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(이하 이 조에서 “한국산업은행”이라 한다)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</p> <p>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첨단 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